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내용 ]

이전	개정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②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5.>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	1.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2. 3. 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4.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3. 15.>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2. 3. 15.>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22. 3. 15.>

# 생활불편 해소

01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 범위 확대

02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

03 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 01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 범위 확대

 추진부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2

###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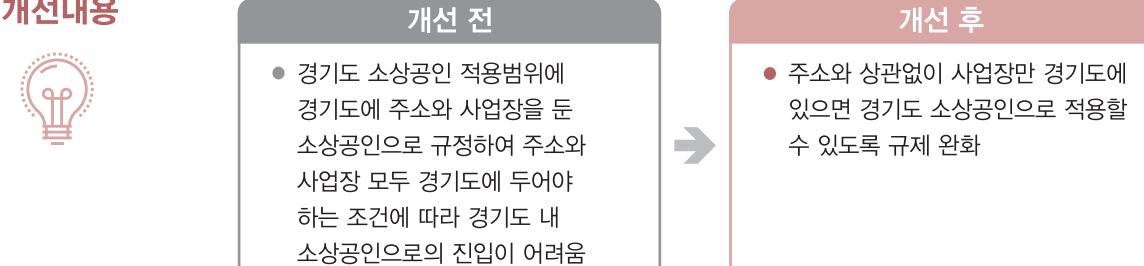
- 경기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진입제한 규제가 존재함을 밝굴.  
\* 도민생활 및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소관부서가 규제조치 필요성을 입증·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밝굴된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개선권고등의 조치를 취함
- 경기도 소상공인 적용범위에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여 주소와 사업장 모두 경기도에 두어야 하는 조건에 따라 경기도 내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현 행]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시·군)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도내에서 종업원(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소상공인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대두

### 개선내용



※ 다만, 창업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민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으로 한정

- '22.06.02. '22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개선권고'
- '22.09.22.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관련 업무협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22.10.07. 경제노동위원회 도의원 면담(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 '22.10.17. 규제완화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1.
- '22.11.30.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대표발의 고은정)
- '22.12.06. 상임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의결(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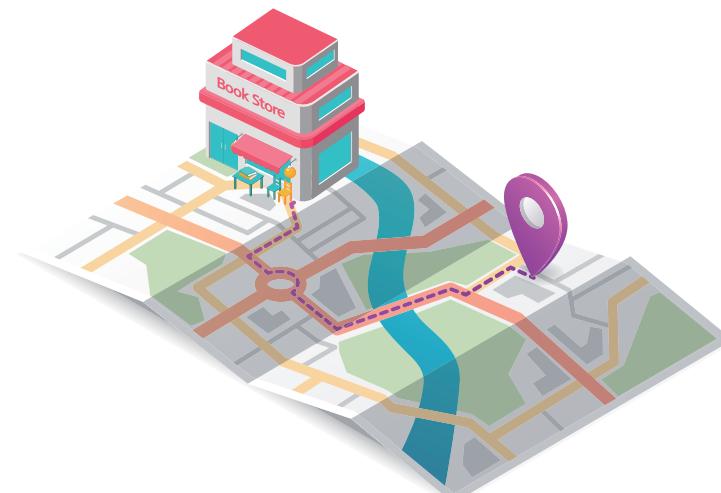
## 개선효과



-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u>주소와 사업장</u> 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u>창업예정자</u> 에 대하여는 제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u>사업장</u> 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u>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u> 에 대하여는 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02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4953

## 개선배경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로 영유아가 적응하기 쉽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등원의 편리함이 있는 어린이집임
-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제1호 나목, 제 16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한 경우 인접한 세대의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와 어린이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임.

## 개선내용



## 개선 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도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됨



## 개선 후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제1호나목 및 제53조제6호에서 어린이집 부분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상충하는 부분 해소  
-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서 어린이집 삭제

※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도 영업이 가능해짐

- '22.05.11. 규제개선을 위한 시·군 간담회 건의(과천시)
- '22.05.20. 규제개선을 위한 시·군 간담회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공동주택과)
- '22.10.26. 준칙(제17차) 개정(안) 의견조회\* 완료
  - \*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시·군 보육관련부서로 의견조회 결과 31개 중 30개 시·군 개정(안) 찬성
- '22.11.29.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별도의견 없음)
- '22.12.09. 준칙(제17차) 시행

## 개선효과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영업권 보장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 보장

##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생략) (1) ~ (2) (생략)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u>어린이집</u>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1) ~ (5) (생략) 중략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u>어린이집</u>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1) ~ (5) (현행과 같음) 중략
6. 전유부분을 <u>어린이집</u> ,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총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6. 전유부분을 <u>어린이집</u> ,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총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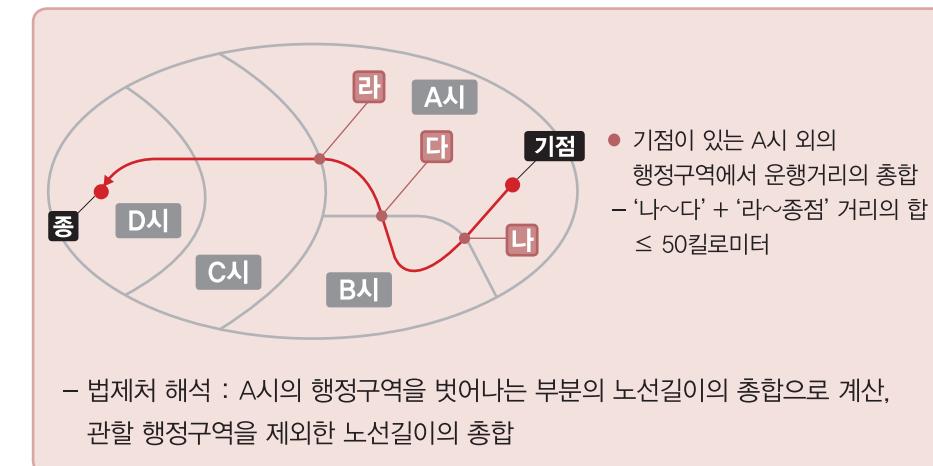
## 03 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

추진부서 평택시 대중교통과 ☎ 031-8024-4694

## 개선배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기점과 종점이 모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법문으로 인해 평택시의 경우 안성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광역버스 운행이 불가한 상황임
  - ① 평택 → ② 안성 → ③ 안성IC → ④ 평택 → ⑤ 오산 → ⑥ 서울



- 기점이 있는 A시 외의 행정구역에서 운행거리의 총합  
- ‘나~다’ + ‘라~종점’ 거리의 합 ≤ 50킬로미터

- 법제처 해석 :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 관할 행정구역을 제외한 노선길이의 총합

☞ 해당규정으로 인해 평택시 시내와 인접한 안성IC, 송탄IC 등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오산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광역버스 이동시간 과다소요 및 서비스 수준 저하 발생

## 개선내용



### 개선 전

-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평택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안성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개선 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개정('22. 6. 8.)
  - 운행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이용하여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항제2호 개정

## 추진과정



'20. 02. 27 법령해석 질의 회신(법제처→도·평택시)

'21. 03. 26 '21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로 제출 (도→ 행안부)

'21. 05. 24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

'22. 06. 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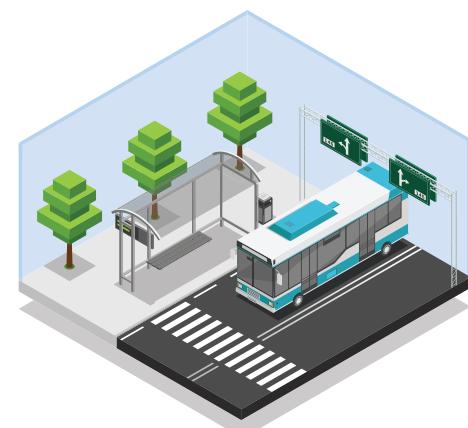
## 개선효과



- 안성IC 또는 송탄IC 등을 경유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신설이 가능해져 평택-서울 간 운행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 평택~서울간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대폭 단축

- 평택시 내 다양한 기점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신설여건 마련



## 평택 시민들 여객車 운수사업법 개정 '환영'

승인 2022-06-15 16:35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기자페이지 >](#)

평택 시민들이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기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의 운행거리가 50km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 근거가 마련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서울·경기·세종 등 7곳 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등의 운행 거리가 50km를 초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평택지역은 서울행 버스노선 개설 요구에도 노선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중·청북읍에서 서울로 향하는 노선과 고덕동에서 오산·송탄IC 등을 통해 서울로 향하는 경우 모두 50km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성IC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우 평택의 최종 행정경계가 진위면이지만 안성IC를 출발, 진위면에 이르기까지 안성과 용인 등을 지나는 고속도로구간을 운행거리에 포함, 62km로 산정한 탓에 노선을 신설할 수 없었다. 평택 비전·동삭동과 서울 강남을 잇는 6600번 버스도 50km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가까운 송탄IC가 아닌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이동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돼왔다.

김성탄씨(35·평택시 안중읍)는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근거가 마련됐다"며 "시외버스 노선이 부족한 불편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선 신설여지가 생겼다. 다만 신규 노선 도입은 준비와 검토 등을 거쳐 2년 이상 소요되며 사업타당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만큼 실제 신규노선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